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91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무원 등의 정치활동 금지 완화	3
(1) 주요 내용	3
(2) 검토의견	8
2.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한기간 규정 삭제	14
3. 기타 법률 정비	2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문수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의미함.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적용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

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1항).

나.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1항).

다. 공무원 등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본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호)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2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공무원 등의 정치활동 금지 완화

(1) 주요 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여 공무원 등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9條(公務員의 中立義務 등) ① <u>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舉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② (생략)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u>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u>)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公務員의 中立義務 등) ① <u>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u> -----.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 -----<u>제60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u>----- ----- -----.

② (생 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선거운동(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을 말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은

5. <u>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第2號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u> 6. ~ 9. (생략) ② (생략) 第85條(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생략) ② 公務員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公務員이 <u>그 所屬職員이나 제53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任·職員을 대상으로 한 選舉運動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 하는 選舉運動으로 본다.</u> ③·④ (생략)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公務員(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u>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u>	<u>제외한다.</u> <삭 제> 6.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85條(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 -----. ----<u>그 소속직원이나</u>-----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 ----- ----- ----- ----- -----<u>선박의 선장</u>----- ----- ----- -----
--	--

[illegible]

1.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그 지
위를 이용하여-----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

1. (현행과 같음)

<삭 제>

<u>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 관·단체</u> 3. ~ 8. (생략) ②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구체적으로,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적용범위를 “지위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②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을 전면 허용하며, ③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금지하고, ④ 공무원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닌 개인으로서 한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며, 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하고, ⑥ 공공기관 등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개 정 안
제9조 (공무원등의 중립의무등)	공무원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u>“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 제한</u>
제57조의6 (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금지)	현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공무원 등의 <u>당내경선운동 전면 허용</u> (공무원, 예비군 간부, 통장 등)

구분	개 정 안
제60조 (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	■현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중 외국인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공무원 등의 경우 <u>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금지</u> (공무원, 예비군 간부, 통장 등) ■<u>선관위원, 공공기관, 농협등 협동조합, 지방공사 임직원등의 선거운동 전면 허용</u>
제85조 (공무원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이 <u>공공기관, 농협등 협동조합, 지방공사 상근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제외</u>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영향을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u>행위로써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제한</u>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u>공공기관, 협동조합(농협 등), 지방공사 등 단체의 선거운동 전면 허용</u>

(2) 검토의견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자 공인의 지위와 사인의 지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와 기본권을 누리는 기본권 주체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이라고 하여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도 아니됨.¹⁾

1) 「대한민국헌법」

그런데,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보다 더욱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게 되는 바, 우리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현행법은 공무원과 같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공무원·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데,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범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①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금지를 “지위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여 개인으로서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②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각급선관위원 등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의 선거운동은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여러 외국의 사례³⁾와 같이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공무원 등의 정치활동 금지 완화>

구분	내용	근거
“지위를 이용”한 경우 제한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가 <u>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u>	§9①
	공무원 등의 <u>선거운동</u>	§60①
	공무원 등이 <u>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u>	§86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외	<u>공무원이 공공기관, 농협등 협동조합, 지방공사 상근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u>	§85
전면 허용	공무원 등의 <u>당내경선운동</u> ⁴⁾	§57조의6
	<u>선관위원, 공공기관, 농협등 협동조합, 지방공사 임직원등의 선거운동</u>	§60①5호
	<u>공공기관의 상근임원, 지방공사 등의 상근임직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u>	§86
	<u>공공기관, 협동조합(농협 등), 지방공사 등 단체의 선거운동</u>	§87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외국의 사례는 참고자료 참조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결정한 바 있음.⁶⁾

둘째, 개정안에 의하면 개인으로서도 당내경선운동, 선거운동 및 선

4) 참고로, 대법원에 의하면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참조),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

5)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조제2항의 의의에 대해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헌법 제7조 제1항)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48)

6) 헌재 2008. 4. 24. 2004헌바47

거에 영향에 미치는 행위로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는데, 일부 공무원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특정 정치활동이 전면 허용되는 자>

구분	내용
당내경선운동 (§57조의6)	국가·지방공무원(정무직 外)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선거운동 (§60, §87)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사 등의 상근임원(또는 중앙회장)
	공공기관 등 또는 그 대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특정 정당 · 후보자 홍보 (§86)	공공기관의 상근임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의 상근 임직원

셋째,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

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⁷⁾

따라서,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공무원의 정치행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 권한, 지위, 직책을 고려함 없이 선거와 관련한 주무기관의 장, 군부대 및 수사기관의 장, 법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u>될 수 있는 公務員(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u>2. 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 또는 敎育委員會의 敎育委員</u>	<삭 제>
<u>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u>	<삭 제>
<u>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u>	<삭 제>
<u>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常勤 任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u>	<삭 제>
<u>6. 「지방공기업법」 第2條(適用範圍)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常勤 任員</u>	<삭 제>
<u>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敎員</u>	<삭 제>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먼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

후보하려는 경우 그 직을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입후보제한직은 아래와 같음.

<현행법상 입후보제한직>

구분	내용
제1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⁸⁾)
제2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제3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제4호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제5호	농협, 수협, 산협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제6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제7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제8호	인터넷신문, 장기간행물, 방송사업자 등 언론인 일부
제9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개정안은 이 중 국가·지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선관위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등 공공부문 직역⁹⁾에 대한 입후보제한기간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자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8) 다만, 정무직공무원은 제외되지 않음.

9) “직역”은 특정한 직업의 영역이나 범위를 의미함(표준국어대사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입후보제한기간>

구분		현행	개정안
제1호	국가·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선거일 전 90일	폐지
제2호	선관위원, 교육위원		
제3호	타 법령에 따라 공무원신분 보유		
제4호	공공기관 상근 임원 일부		
제5호	농협·수협 등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제6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제7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제8호	인터넷신문, 방송사업자 등 언론인 일부		선거일 전 90일
제9호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등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직역을 입후보제한직에서 제외하는 경우, 공직선거 입후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해당 직역의 정치참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입후보제한기간 규정의 입법 취지가 특정 직역이 공적 권한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입후보기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부정방지법」¹⁰⁾에 대하여 공무원의 경우 그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10)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은 2005년 일부개정으로 제명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됨

남용 또는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꾀하고 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¹¹⁾

다음으로,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한기간 규정>

구분	내용
원칙 (§53①)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해야 함 ¹²⁾
예외 (§53①단서)	다음의 경우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1. <u>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u> 2. <u>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u>

개정안은 이 중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1) 헌재 1995.3.23. 95헌마53, 2003.9.25. 2003헌마106 결정

12)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제53조제1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제53조제3항)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 직군과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개정안의 입법화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 국회의원의 공무담임권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3. 기타 법률 정비

개정안은 ① 정당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던 규정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② 현행 선거범죄로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학장·교수 등의 교원과 협동조합의 조합장·상근직원 등을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 ①・② (생략)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u>지방자치단체</u>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③ ----- ----- ----- ----- -----지방 자치단체가----- ----- ----- ----- ----- ----- -----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⑧
(생 략)

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생 략)

⑩·⑪ (생 략)

第266條(選舉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間,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⑩·⑪ (현행과 같음)

第266條(選舉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 ① -----

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u> 2. ~ 5. (생략) ②·③ (생략)	----- ----- -----. 1. ----- -----<u>직</u>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먼저, 현행법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으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포함)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①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②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 등의 직원이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되고 있음.

개정안은 정당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공공기관등의 직원이 투표사무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등의 직원이 안 제60조·제85조·제87조에 따라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른 조치로 보임.

다음으로,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학장·교수 등 교원, 협동조합 임직원 등을 제외하려는 것임.

이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한기간 규정인 제53조제1항(입후보제한기간) 제1호부터 제7호가 삭제됨에 따라, 이로 인해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공무원·각급선거관리위원 등은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교원, 협동조합 임직원 등도 공무담임권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자료]

<주요 국가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

구 분	공무원의 정치활동 내용	정당 가입	정치 자금 기부	근거규정
영 국	- 모든 공무원들은 근무 중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공무원인 현업 및 비사무직급은 전국·지역단위 정치활동 가능 - 정치적으로 제한된 공무원인 고위공무원단 등은 모든 형태의 전국단위 정치활동 금지	가능	가능	2010년 헌법개혁 및 거버넌스 법 - 공무원복무규정, 각료규정, 공무원운영규정
미 국	- 정치문제 및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시 가능 - 특정정당자금의 유치와 제공유도 금지(자발적 납부 가능) -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 특정 정당의 직위보유 금지	가능	가능	1883년 펜들턴법 1939년, 1940년 제1차, 2차 해치법(규제범위 확대)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 개정(완화) 1993년 해치법 개정(완화)
프랑스	- 공무원의 의원 출마 가능 - 당선되어도 공무원 신분 보장	가능	가능	1946년 일반공무원법
독 일	- 연방상원의원의 경우 공무원 겸직 허용 - 연방수상 및 장관은 겸직 금지 - 하원의원 출마 시 낙선되면 공무원신분 유지, 당선되면 사임하되 연금 보장	가능	가능	1953년 연방공무원법
일 본	-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불가 - 정당, 기타 단체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음 -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	가능	불가	1945년 국가공무원법 1949년 인사원규칙
스페인	공무원의 경우 중립성을 유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규정 외에 정치활동에 관한 규제가 없음	가능	가능	공무원기본법
스웨덴	정치적 활동에 제약이 없지만, 업무에 있어 정치적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경계함	가능	가능	-
스위스	- 직업상, 근로관계상 기관의 비밀유지 규정 -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 비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공무원이라는 지위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가능	가능	2000년 연방인사법
캐나다	- 업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면 개인의 정치활동은 자유로움 -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위원회 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가능	가능	공무원법
호 주	- 공무원은 비정치적이어야 함 -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직해야 함 - 선거운동 중에 공무원 유니폼을 입거나 공무와 관련 있어 보이게 해서는 안됨	가능	가능	1999년 공무원법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별책]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표", 2022년 12월, 124p.